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 Universal Design 인프라 구축 및
생활밀착형 시설의 정당한 편의 제공 범위 조사 -

성 명	이경혜 원장
	김인순 부장
	김윤호 과장
	박서현 대리
	강병곤 대리
	김동건 위원
	전영빈 활동지원사
소 속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여 행 국	미국(워싱턴 D.C, 볼티모어)
여 행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등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 증진의 사회적 요구가 제기됨 • 또한, 대형마트, 영화관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 • 이에, 「장애인등편의법」과 관련해 미국에는 The Architectural Barriers Act (AB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하, ADA법)이 있으며, U.S. Access Board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미국의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법적 규정과 정책, 변화 흐름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함
여행승인기간	2023. 6. 5.(월)~ 6. 11.(일)(5박7일)
실제여행기간	2023. 6. 5.(월)~ 6. 11.(일)(5박7일)

목 차

I.출장개요	4
1. 출장목적	
2. 방문국가 및 기관	
3. 출장단원	
4. 출장기간 및 세부일정	
II.방문기관별 출장내용 및 시사점	7
1. U.S. Access Board	7
2. International Code Council(ICC)	11
3.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NFB)	18
4. National Park Service(NPS)	21
5. 생활밀착형 시설의 정당한 편의 제공 범위 조사	26
6. District Wharf에 적용된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조사	29
III.종합적인 시사점 및 해외출장 소감	31
IV.첨부 사항	33

I. 출 장 개 요

1. 출장목적

-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등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 증진의 사회적 요구가 제기됨
- 또한, 대형마트, 영화관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
- 이에, U.S. Access Board, NPS 등 연방기관을 방문하고 ICC의 국제기준 제정에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의 적용 범위, 제·개정 프로세스 등 인터뷰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선진사례 수집을 통해 국내 「장애인등편의법」의 개정과 기술지원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범위를 국내와 비교 하여 분석하고, 시각장애인연맹(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NFB)의 장애당사자 등과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에 정당한 편의 제공의 적용 범위를 조사하고자 함
-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주가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서비스,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까지 중시됨에 따라 기존의 물리적 환경 조성의 역할을 넘어 인지적·심리적 환경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식확산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이에, 미국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확산 사업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NPS(국립공원관리청)에 방문하여 국립공원관리청 소관 시설에 적용되는 UD요소와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내셔널 몰&메모리얼 파크 등 현장답사를 통해 실제 적용 사례를 수집하고자 함

2. 방문국가 및 기관

○ 미국(워싱턴 D.C. 및 볼티모어)

1) U.S. Access Board

-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연방기관으로서 건물환경, 대중교통 수단, 통신장비, 전자 및 정보 기술에 대한 설계기준을 개발하고 유지·관리함. 장애인 접근성 관련 표준 및 지침 개발과 접근 가능한 디자인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의 평등을 촉진함

2) International Code Council(ICC)

- 미국의 건축과 안전 규정을 개발하며,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국제 기준과 규격을 제공하는 조직

3) National Park Service(NPS)

- 미국의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연방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역사적 보존과 휴양공간의 조성 및 유지를 지원함

4)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NFB)

- 시각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 시각장애인 연맹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큰 시각장애인 조직

3. 출장단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본원	원장	이경혜	대외기관 총괄 등
본원 UD환경정책기획팀	부장	김인순	국외업무 총괄 등
본원 BF인증팀	과장	김윤호	미국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 자료수집
본원 UD환경정책기획팀	대리	박서현	미국 장애인 접근성 관련 규정의 입법과 운영 조사
본원 UD환경정책기획팀	대리	강병곤	유니버설디자인 협업인프라 발굴
외부위원	위원	김동건	통역 및 미국 건축, 장애인법 관련 협업
외부위원	간사	전영빈	한국장애인개발원장 활동보조

4. 출장 기간 및 세부 일정

월일시 (요일)	일 정						
	출발/도착 [체류국(지)]	숙박국(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직책포함)		
[1일] 6/5 (월)	09:00 ~ 13:00	미국(워싱턴D.C.)	워싱턴D.C.	Georgetown 내 소규모 상점 접근성 현황 조사, 영화관(AMC)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싱턴 D.C.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중 하나인 Georgetown 을 방문하여 건축건물, 소규모 상점가의 접근성 현황을 조사함 		
	14:00 ~ 18:00					현지 전문가위원 미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질의 자료 정리
	서울출발 10:25(대한항공) 13시간 50분 소요 (-13:00) 도착 현지시각 11:15						
[2일] 6/6 (화)	8:00 ~ 12:00	미국 (워싱턴D.C.)	워싱턴D.C.	District wharf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도시재생 사례)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싱턴 D.C.에서 가장 최근에 가장 큰 규모로 재개발된 지역 인 District Wharf를 방문하여 도시계획, 건축건물에 적용된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를 조사함 		
	13:00 ~ 17:00			U.S. Access Board 연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물리적 환경의 권리 보장 범위 등 인터뷰조사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법안의 제·개정 관련 인터뷰조사 		
				일정 종료 및 자료 정리			
[3일] 6/7 (수)	9:00 ~ 13:00	미국 (워싱턴 D.C.)	워싱턴D.C.	생활밀착형시설 사례 답사 (대형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대형마트(Walmart 등) 의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 분석 생활밀착형 시설의 단차 등 접근성, 편의시설의 설치 범위 사례 조사 		
	14:00 ~ 18:00			ICC (International Code Counc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국제 기준과 규격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등 편의법, BF인증 등을 비교조사 및 산전사례 수집 		
	*이경혜 원장님 외 1인 도착			일정 종료 및 자료 정리			
[4일] 6/8 (목)	8:00 ~ 17:00	미국 (워싱턴D.C., 볼티모어)	워싱턴D.C.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NFB (시각장애인연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볼티모어의 시각장애인 연맹 을 방문하여 미국의 시각장애인 에게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및 자원을 유니버설디자인 의 관점에서 인터뷰 조사 		
				일정 종료 및 자료 정리			
[5일] 6/9 (금)	09:00 ~ 13:00	미국 (워싱턴D.C.)	워싱턴D.C.	National Park Service, NPS (국립공원관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장애인등이 국립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 접근권 등의 인터뷰조사 및 선전사례 조사 		
	14:00 ~ 18:00			국립공원 및 건축물 Universal Design 사례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tional Mall and Memorial Park 내 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편의시설 설치현황 현장답사 		
				일정 종료 및 자료 정리			
[6일] 6/10 (토)	09:00 ~ 12:00	미국(워싱턴D.C.)	워싱턴D.C.	워싱턴D.C. 델레스공항 (I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소 - 현지공항 이동 		
[7일] 6/11 (일)		서울도착					

II. 방문기관별 출장내용 및 시사점

1. U.S Access Board

1) 개요

-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연방기관으로서 건물환경, 대중교통수단, 통신장비, 전자 및 정보 기술에 대한 설계기준을 개발하고 유지·관리함
- 대상인사 직위, 성명
 - Executive Director, Sachin Dev Pavithran
 - Public Affairs Specialist, Phill Bratta
 - Events and Communication Specialist, David O'Keefe
 - General Counsel, Christopher J.Kuczynski
 - Director of office of technical and information services, Alison levy
 - Technical Assistance coordinator, Scott Windley
- 주소: 1331 F Street NW, Suite 1000, Washington, DC 20004-1111
- 면담일시: 2023. 6. 6.(화) 13:00~15:00, 1331 F St. NW, Suite 800

2) 기관 소개

- Access Board의 주요 기능
 -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하여 연방기관 간의 조정기관 역할을 수행함
 - 1973년 설립 당시의 역할은 ABA적용 대상시설에 대한 접근성 보장 업무에 한하였으나 관계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역할이 확장되어왔으며 현재 장애인 접근성 관련 표준 및 지침 개발과 접근 가능한 디자인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의 평등을 촉진함
 - ABA에 따라 연방 자금 지원 시설에 적용되는 접근성 표준을 집행함
 - ADA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건물환경, 대중교통수단, 정보통신기술 및 의료진단장비에 대한 설계기준을 개발하고 유지·관리함
 - ADA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설계기준 및 접근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수행함

○ Access Board와 관계된 법률

-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of 1990: 민간 부문과 주 및 지방 정부 부문에서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시설, 교통, 고용 및 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요구함. Access Board에서는 ADA가 적용되는 시설의 건설 및 변경에 대한 접근성 지침과 운송 차량 설계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고 유지관리 함
- The Architectural Barriers Act (ABA) of 1968: 장애인이 연방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다루는 최초의 연방법으로써 연방 기금으로 설계, 건설, 변경 또는 임대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요구함. Access Board에서는 ABA 접근성 지침을 유지관리하고 민원 조사를 통해 ABA를 집행함
-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연방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활동, 고용에 대한 접근성을 요구함. 이 법 섹션 502에 근거하여 Access Board가 설립되었으며 1998년 섹션 508에 따라 전자 및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 표준을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며 2010년 환자 보호 및 적정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통과에 따라 섹션 510 추가되어 의료 진단 장비에 대한 접근성 표준을 개발하고 유지·관리함
-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통신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편함. Access Board에서는 섹션 155에 근거하여 통신 제품 및 서비스 접근성 지침을 수립함

3) 기관 방문내용

○ 접근성 관련 법률 제·개정 진행 중에 있는 이슈

- 공공 통행권(the Public Rights of Way): 보도 및 거리, 횡단보도, 연석 경사로, 보행자 신호, 노상 주차 및 기타 공공 통행권 구성 요소에 대한 접근성 지침 마련
- Self-service Transation Machines(SSTMs): 키오스크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SSTM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지침 마련
- 전기차 충전소: 전기자동차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접근성 지침 마련

- **의료 진단 장비:** 휠체어 사용자가 의료 진단 장비로 가능한 한 독립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성 지침 마련
- **철도차량:** 오래 전에 만들어진 철도 차량 접근성 지침의 업데이트

4) 면담록

- 접근성 관련 규정의 시행 방법

- Access Board는 접근성과 관련된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만 ABA를 제외하고는 집행하고 있지 않음
- 또한, Access Board에서 발표한 ABA나 ADA 지침은 발행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침의 집행기관에서 채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임. 한편, 재활법 섹션 508에 근거한 전자 및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 표준은 발행시 시행됨

- ABA의 집행 방법은 시설 이용자(시설에서 근로하고 있는 자를 포함함)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Access Board에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

- ABA의 집행 프로세스

- 차별에 대한 불만에 대응하는 프로세스로서 ABA 적용을 받는 시설에 대한 이용자(근로자 포함)의 민원 접수 시 조사의 방법으로 진행함

【그림 1】 이용자의 민원접수 양식

- 신축 시설과 기존 시설에 대한 기준 적용의 차이점

- ABA를 적용 받는 시설의 경우, 1968년 8월 12일 이전 건축물에는 규정이 적용 되지 않고 이후 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변경할 때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함. 다만 변경이 없는 기존 시설의 경우에도 재활법 적용을 받는 시설의 경우에는 접근성 제공 의무가 있으며 신축 건물에서처럼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음

- ADA를 적용 받는 시설의 경우, 1993년 1월 이전의 시설들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데 전체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쉽게 달성할 수 있고 약간의 어려움이나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ICC와의 협력 관계

- 접근성을 다루는 ANSI A 117.1 기준과 관련된 위원회에 Access Board가 참여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IBC의 접근성 기준이 ADA, ABA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왔고 현재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임
- IBC기준에서 접근성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건물의 허가권과 관계있기 때문에 ADA보다 접근성 시행에 강제력이 생기므로 더 효과적임

- 접근성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유형을 어떻게 포용하는지

- 접근성 기준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장애유형을 위한다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지를 다루기 위해 노력하며 작성된 기준이 확정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장애인접근성을 전담하는 연방정부의 독립적 기관으로서 운영되는 측면의 장점

- 우리는 규모가 작고 자원이 많은 기관은 아니지만 우리의 작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 더 많은 독립성을 가지며 이러한 독립성은 기관 설립 당시부터 어떠한 큰 부서에 갇히지 않도록 의도된 것임

5) 방문사진



【그림 2】 U.S. Access Board 회의 사진

2. International Code Council(약칭: ICC)

1) 개요

- 미국의 건축과 안전 규정을 개발하며,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국제 기준과 규격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국제적인 표준 기준과 규격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 등의 기준을 비교·분석하고자 함
- 대상인사 직위, 성명
 - Judy Zakreski(Senior Vice President, Global Operations & Solutions)
 - KARL W. AITTANIEMI, P.E.(Director of Standards)
 - Kimberly Paarlberg, R.A.(Senior Staff Architect in Technical Services)
- 주소: 200 Massachusetts Avenue N.W. Suite 250 Washington, D.C. 20001
- 면담일시: 2023. 6. 7.(수) 15:00~18:00

2) 기관 소개

- ICC 기관
 - ICC는 1994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두 개의 기관인 BOCA International (Building Officials and Code Administrators International) 와 ICBO(International Conference of Building Officials)가 합병하였음
 - BOCA International은 1915년에 설립된 조직으로, 건축과 안전 규정 개발을 위한 전문 기관
 - ICBO는 192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건물 건설 및 안전 분야에서 국제적인 표준 개발 기관
 - 2003년부터 Code Council은 교육, 연설 참여, 회의, 언론 출연, 대중 인식 캠페인 등을 통해 건물 안전을 국가적 논의의 최전선으로 뚫
 - 건물과 구조물의 건축 규정과 안전 기준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며, 이를 기반으로 건축물 건설과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건축, 건설 및 화재 안전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조직임
 - 건축 및 엔지니어 등 관련 7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code를 이용하는 건축가, 공무원,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를

회원제로 운영하여 많은 수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 ICC의 운영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며, code를 개발하여 라이선스 판매, 서비스 제공 등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책을 판매하거나, 교육 등의 업무도 수행함

3) 기관 방문내용

○ 면담 내용

가) ICC 기관 및 International code의 내용

(1) International Code 개발



【표 1】 INTERNATIONAL CODE 개발 절차

※ 하나의 Code개발 시 해당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하여 수행

- ① 제안 접수: Code개발 과정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개정 주기마다 제안을 받음. 주기는 보통 3년이며, 공개적으로 제안을 받으므로 누구나 가능함
- ② 제안 검토: 제안된 코드 개선 사항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위원회와 전문가 그룹들에 의해 검토 제안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평가
- ③ Code개발 위원회 회의: 제안 검토 이후, 코드 개발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며, 제안된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동의하거나 수정됨
- ④ 공개의견 청취: 위원회 회의 이후, 공개 의견 청취 기간이 있음. 해당 기간 동안에는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은 위원회에서 검토됨
- ⑤ Code 개정: 위의 절차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Code가 개정·배포됨
- ⑥ 채택 및 발효: Code 개정이 완료되면, 해당 Code를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택 여부에 따라 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

(3) International Code 종류

- ICC의 Code는 건축물의 안전, 환경, 건축, 소방안전 등 건설 및 건축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에 기반을 두지만,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음



-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
- International Fire Code(IFC)
- International Mechanical Code(IMC)
- International Plumbing Code(IPC)
- 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IRC)
-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IECC)
- International Existing Building Code(IEBC)
- International Fuel Gas Code(IFGC)
- International Property Maintenance Code(IPMC)
- International Private Sewage Disposal Code(IPSDC)
- International Zoning Code(IZC)
- International Wildland-Urban Interface Code(IWUIC)
- ICC Performance Code(ICCPC)
- International Green Construction Code(IgCC)
- International Swimming Pool and Spa Code(ISPSC)

【표 2】 INTERNATIONAL CODE 종류

- ICC와 주로 Interantional Building Code(IBC)의 CHAPTER 11 ACCESSTIBILITY와 ICC A117.1(American National Standard)에 대해 회의를 진행함
-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는 건물 설계와 건축 기준을 포함한 국제적인 건축 Code로 건물의 설계, 안전 등에 대한 규정을 제공함
- ICC A117.1은 장애인과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건물과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건물의 입구, 접근로, 계단, 승강기, 화장실 등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설계와 건설 기준을 제시함



【그림 3】 IBC와 ICC A117.1

(4) International Code의 적용

- 미국은 50개의 주로 각 분산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building code를 개발하는 중앙 정부기관이 없음
- ICC에서는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 등 여러 개의 code를 개발하며, 일반적으로 3년 주기로 code가 개발되고 있음. 각 주에서는 연도별로 각각 code를 다르게 채택하고 있으며, 적용하는 범위 또한 다름
- 예를 들어 2023년이지만, A주에서는 2018년의 IBC를 채택하고 있고, B주에서는 2015년의 IBC를 채택하여 유지하기도 함
- International Code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라이선스를 통해 code를 적용하고 있음
- 다른 나라에서 건축법 등을 개발할 때 ICC의 여러 개 code 중 컨설팅을 통해 채택을 하고 있음. 최근 파키스탄의 건축법을 개발할 때, ICC의 컨설팅을 통해 하나의 code에 추가로 필요한 code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ICC Code의 건물 접근성 및 장애인 등과 관련된 내용

(1) ICC Code의 접근성 기준

- 건물 접근성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음
- 공공의 출입구는 적어도 60%이상 장애인이 출입 가능해야함. 하지만, 건물에 접근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간의 예외 적용을 명시함

CHAPTER 11 ACCESSIBILITY
SECTION 1105 ACCESSIBLE ENTRANCES

1105.1 Public entrances.

In addition to accessible entrances required by Section 1105.1.2. through 1105.1.8., at least 60 percent of all public entrances shall be accessible.

Exceptions:

1. An accessible entrance is not required to be accessible.
2. Loading and service entrances that are not the only entrance to a tenant space.

【표 3】 2021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 일부 내용



【그림 4】 건물의 입구 접근

- 기존 건물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지원 내용 등

CHAPTER 3 PROVISION FOR ALL COMPLIANCE METHODS
SECTION 306 ACCESSIBILITY FOR EXISTING BUILDINGS

306.7.16.3 Entrances.

Where an entrance cannot be made accessible in accordance with Section 306.7.5, an accessible entrance that is unlocked while the building is occupied shall be provided; or, a locked accessible entrance with a notification system or remote monitoring shall be provided

Signs complying with Section 1112 of the international Building Code shall be provided at the public entrances and the accessible entrance.

【표 4】 2021 INTERNATIONAL EXISTING BUILDING CODE(IEBC) 일부 내용



【그림 5】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인적지원

(2) 장애인 전기차 충전소의 기준

- 주차공간의 전기차 충전소까지의 접근 통로 바닥마감은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차량과 충전소 사이의 케이블이 접근 가능한 경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함

- 볼라드, 연석 등이 전기차 충전소를 방해하지 않도록 위치해야 함

CHAPTER 5 GENERAL SITE AND BUILDING ELEMENTS SECTION 502 PARKING SPACES

502.11 Electrical vehicle charging stations.

An electrical vehicle charging station serving a parking space shall comply with Section 502.11.

502.11.1 Operable parts.

Operable parts on the charging station intended for operation by the user, including card readers, shall comply with Section 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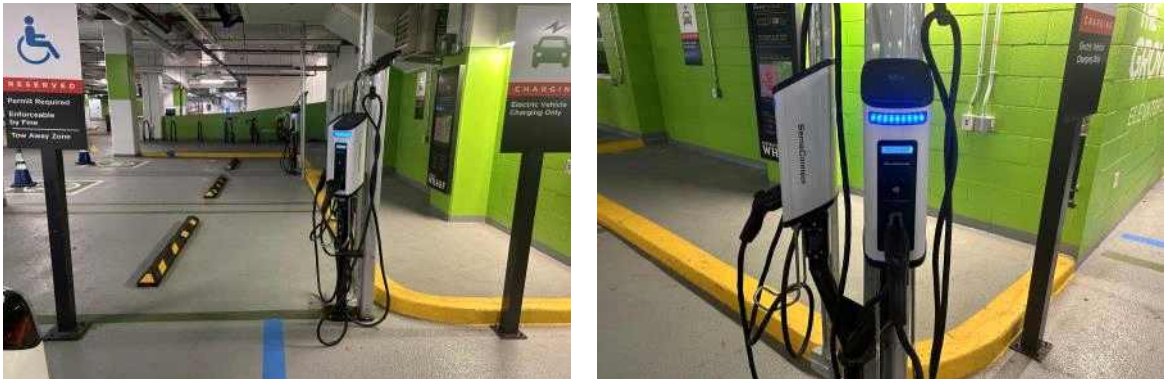
502.11.2 Accessible route.

An accessible route shall be provided from the access aisle adjacent to the parking space to the clear floor space complying with Section 502.11.1 adjacent to the vehicle charging station. When the vehicle is being charged, the accessible route shall not be obstructed by the cable between the car and charging station.

502.11.3 Obstructions

Protection bollards, curbs or wheel stops shall be located so that they do not obstruct the clear floor space required by Section 502.11.1 or the accessible route required by Section 502.11.2.

【표 5】 2017 ICC A117.1 ACCESSIBLE AND USABLE BUILDINGS AND FACILITIES 일부 내용



【그림 6】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소

4) 면담록

- International Code를 개발할 때, 위원회의 구성 여부 및 방법은?
 - International Code를 개발할 때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위원회는 U.S. Access Board를 포함한 약 50개 정도의 전문 조직으로, 이는 ICC 위원회로 가입 등을 통해 구성된다. 또한, code개발 시 제안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검토 제안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평가한다.
- ICC의 수익구조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 ICC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 code를 개발하면 code의 라이선스 계약 취득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code의 책을 판매 또는 디지털화를 통해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해 수익을 운영하고 있다.

- 다른 나라에서 code를 채택한 사례가 있는지?
 - 최근 파키스탄에서 건축과 관련된 규정을 개발할 때, ICC code의 라이선스를 계약하여 컨설팅을 진행했다. 관련 규정의 필수적인 하나의 코드에서 추가로 필요한 code를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의 접근성 적용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 신축 건물은 각 주에서 채택된 code의 접근성과 관련된 기준을 적용하나, 기존 건물의 경우 접근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code가 작성되어 있다.
 - Chapter 11. Accessibility(Section 1105)
- Accessibility Standard를 수정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제안서가 접수되면 code의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제안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제안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수정한다. 전문가의 의해 수정된 제안서를 공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이러한 과정을 최소 2번 이상 반복하고 있으며, 몇 년 동안 수정하는 기간을 걸쳐 최종적으로 code를 수정한다.
- 일시적인 장애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마련되는지?
 - 사고로 인해 회복 중이거나, 나이가 들어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정도로 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기준 개발을 검토 중이다. 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장애의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재단을 통해 고령이거나, 고관절,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나 보조원이 옆에서 일어나거나 앉아서 손잡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분의 공간을 확보하여 조정할 수 있다. 최소한의 공중 보건과 안전을 위해 시행 가능한 요건이 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기존 건물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인적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 최대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이용할 때 계단으로 인해 현관을 접근할 수 없으면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배달을 해주는 등의 안내문을 설치한다. 해당 조항을 IEBC에 작성되어 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IBC, ICC A117.1, IECC 등에 전기차 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 기술 기준을 대응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에

기준이 작성되었다. 또한, 전기차 주차구역 code 기준에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 수정된 내용이 배포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 ICC A117.1의 Chapter 5.(Section 502.11 Electrical vehicle charging stations)

5) 방문사진



【그림 7】 ICC 회의 사진

3.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NFB)

1) 개요

- 1940년 11월 16일 Wilkes-Barre, Pennsylvania에서 시각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 시각장애인 연맹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큰 시각장애인 조직
- 대상인사 직위, 성명
 - Director of Public Relations, Christopher S.Danielsen, J.D.
 - Executive Director for Advocacy and Policy, John G.Parè Jr
- 주소: 200 East Wells st, Baltimore, MD 21230
- 면담일시: 2023. 6. 8.(목) 10:00~14:00

2) 기관소개

- NFB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서비스
[훈련 및 교육]
 - National Center for Blind Youth in Science(시각장애인청소년을 위한 과학, 수학 교육)

- Early Childhood Initiatives(시각장애아동과 가족에게 문맹퇴치 및 독립 보행을 위한 지원)
- NFB BELL Academy(시각장애 및 저시력 아동을 위한 점자 및 비시각 기술교육 여름 프로그램)
- Teachers of Tomorrow(시각장애 및 저시력 학생의 교사 대상 프로그램)
- Braille Certification(문학, 수학, 음악 점역 교과과정 제공, 국회도서관 점역 인증)
- Career Mentoring(직업 멘토링)

[옹호 및 지원]

- Advocacy(옹호활동)
- Scholarships and Awards(장학제도 및 상)
- Legal Program(법률지원)
- Research Program(연구)
- Blind Equality Achievement Month(시각장애인 평등 성취의 달)

[기술 및 제품]

- Independence Market(흰지팡이, 의료기기, 주방도구, 문헌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제품과 문헌 판매)
- Free White Cane Program(흰지팡이 무료 배포 프로그램)
- Center of Excellence in Nonvisual Access(비시각적 접근성 기술 지원)
- NFB-NEWSLINE®(시각장애인, 저시력자, 청각장애인 등 모든 사람을 위한 무료 오디오 뉴스 서비스)
- KNFB Reader(텍스트 음성/점자 변환 모바일 앱)
- Free Slate and Stylus Program(점자쓰기장치교육)



【그림 8】 시각장애인을 위한 과학교육 자료



【그림 9】 Independence Market



【그림 10】 International Braille and Technology Center for the Blind(IBTC)

3) 기관 방문내용

○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프로젝트

- 조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소음의 전기 자동차가 초래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제네바에서 차량 규제의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the 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in Geneva)에 협력함. 소리의 부재는 모든 보행자, 특히 시각장애인 보행자에게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며 현재 국제규정에 전기차가 인공적인 소음을 내도록 규정됨
- 전맹인, 저시력인, 기타 독서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형태의 책 및 기타 저작물 제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예외를 두는 국제 협약
- UN 장애인권리협약 등

4) 면담록

○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유형까지도 고려된 프로젝트 소개

- 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강화 법안

- 청각장애, 절단장애가 고려됨.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의료기기 관련 법안
 -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사용뿐만 아닌 비장애인이자녀, 부모 등을 돌보는데 의료기기의 접근성이 요구됨.
- 자율주행 자동차
 - 시각장애인 테스트를 통해 탑승할 차량의 인지가 쉽도록 개선함
-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제도 소개
 - 흰지팡이 무료 배포 프로그램
 - 안내견
 -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GPS 활용 어플
(예: Microsoft Soundscape, Be my eyes)

5) 방문사진



【그림 11】 NFB 회의사진

4. National Park Service(미국 국립공원관리청)

1) 개요 및 방문목적

-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를 방문하여 ABA법의 적용과 각 주정부에서의 인허가 관계 등 사례를 조사하고 국립공원관리청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있어 접근성을 개선하는 절차나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주소: 1849 C St NW, Washington, DC
- 대상인사 직위, 성명
 - National Mall and Memorial Park 책임자, Li Yue

- National Mall and Memorial Park 안내시스템 담당자, G. KAUS

○ 일시: 2023. 6. 9.(금), 10:00~13:00

2) 기관소개

○ 국립공원국은 내무부 산하의 기관. 1916년 8월 25일에 제정된 <국립공원국 조직법>에 따라 설립됨. 직원 수는 상근 직원 약 15,000명, 임시 직원 약 5,000명임. 이 외에도 매년 약 14만명의 공원 자원봉사자 직원이 활동을 보조하고 있음

국립공원국은 국립공원 외에도 각종 보호 지역과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리 대상 지역은 “국립공원 시스템”이라고 총칭하고 있음. 국립공원 시스템은 391곳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34만km²에 달함. 이들 중 국립공원의 명칭으로 지정되어있는 단위는 58곳이며, 다른 명칭의 단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미국 국립 기념물, 미국 국립 역사공원, 미국 국립 보호구역, 미국 국립 기념물, 미국 국립 역사 가도, 미국 국립 풍경 가도, 미국 국립 유산 지역, 미국 국립 레크리에이션 지역, 미국 국립 경관 하천, 미국 국립 호반, 미국 국립 해안, 미국 국립 군사공원, 미국 국립 묘지 여러 개의 것들이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는 요소가 있는 경우도 있음. 국립공원국의 기반에는 국립 공원 경찰, 자연 보호관, 역사적 건조물 조사소(HABS) 등이 있음. 한편으로 국가 역사 등록 제품, 자연 랜드마크 등의 제도도 주관하고 있음

3) 기관 방문내용

- 국립공원관리청은 미디어서비스 접근성을 제공

- 1) 오디오 설명 및 캡션보드 : 캡션 보드는 캡션을 표시하는 LED 화면있음. 프로젝션 스크린 또는 비디오 모니터의 아래, 위 또는 옆에 배치되는 별도의 장비가 있음. 캡션 보드는 다양한 크기로 제공됨. 정확한 크기는 방의 크기, 스크린의 크기, 청중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에 따라 결정됨. 오디오설명은 일반적으로 전맹이거나 저시력인 방문자가 사용하지만 일부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도 오디오 설명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음. 오디오 설명은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각적 콘텐츠를 설명

함. 보조 청취는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여 소리를 소스에서 청취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난방 및 냉각 시스템과 사람들의 대화와 같은 소스에서 나오는 주변 소음을 차단함. 보조 청취 장치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볼륨을 증폭할 수도 있음. 이러한 장치에는 일반적으로 헤드셋, 이어버드 및 유도 루프가 포함됨. 증폭된 소리는 무선 주파수, 적외선 또는 유도 루프를 통해 사용자의 헤드셋, 이어버드 또는 t-coil 호환 보청기로 전송됨.

- 2) **점자안내가이드:** Harpers Ferry Center for Media Services(HFC)의 간행물 사무소는 2010년 이후 개발된 새로운 Unigrid 브로셔에 대한 점자 표기를 제공함. (Unigrids는 공식 공원 브로셔) 30개의 점자 판 소책자, 관련 디지털 파일 및 지침. 점자를 사용하는 방문자는 가져갈 수 있도록 사본을 제공해야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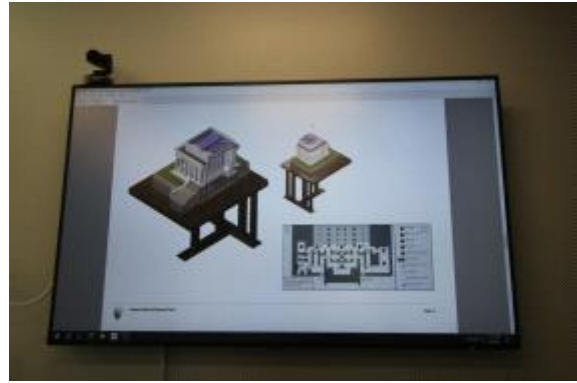
4) 면담록

- NPS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1960년대 초에 건설됨. 자산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 시스템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18,700개의 건물이 있으며, 그 중 많은 건물이 1968년 ABA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설된 것으로 나타남. 건축 장벽법 이전에 지어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개선의 방법으로 물리적환경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링컨박물관을 비롯하여 기존 건축물에 접근성 개선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은 기존건축물에 3D프린터를 활용하여 모형을 만들고 촉각지도와 음성안내를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물리적 환경에서 휠체어 등을 위한 사용자 접근성으로는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오래된 건축물에도 지속적인 접근성개선을 해나가고 있음. 점자브로셔 등 해설적안내에 대한 접근성은 Harpers Ferry Center에서 제작과 지침을 배포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 국립공원 시스템의 많은 단위는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면서 접근을 제공하는 데 추가적인 어려움을 제기하는 캠프장과 산책로를 포함하여 자연 및 미개발 토지로 구성됨. 이러한 유형의 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접근 표준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 지금까지 탐방로, 캠핑장 등 공식 지침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는지?

-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연방정부 소속으로 US Access Board가 제정 발표한 ABA법을 따라 건축물 및 관련 기준들을 제정. 공식적인 접근 표준에 대해 ABA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으며, 없는 경우 US Access Board와 협업해 운영 중임
- 접근성에는 장애가 있는 시민이 우리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공원에 도착하면 다른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됨. 이는 영화, 출판물, 강의, 길가 전시물 등 제공되는 교육 및 통역 서비스를 시각 장애인 방문객,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 여기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점자 및 큰 활자 출판물, 시청각 프로그램의 오디오 설명 및 촉각 전시물을 제공하고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수어 통역 및 보조 청취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됨. 광범위한 시각 및 청각 손실을 경험하는 인구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표준은 아직 개발 과정에 있음. Harpers Ferry Center를 통해 NPS는 공원 방문자 센터에 표시되는 시청각 제품에 대한 자막과 같이 장애가 있는 방문자가 프로그램과 미디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석 도구를 제작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음. 혹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례와 타 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접근성 보조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는지?
- Harpers Ferry Center는 여러분야에 걸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여기서 운영하는 방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함. 먼저 미디어 접근성 평가에서는 오디오의 설명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다양한 접근성에 대한 자료를 검증함. 접근성 관련된 지침 및 체크리스트는 「Programmatic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National Park Service Interpretive media」라는 발간집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NPS는 프로젝트가 설계 및 건설될 때 연방정부법을 따르겠지만 허가의 경우 각 주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거로 알고 있음. 건축허가 당시 접근성기준을 세울 때 ABA를 적용하지 않고 ADA를 적용하게 되는지?
-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이 건물을 지을 때 ABA법을 보고 따르지만, 그렇다고 ADA를 보지 않는 것은 아님. ABA와 ADA는 대부분 항목들이 비슷해서

어느 기준을 적용해도 거의 비슷하게 설계되며,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은 각 주의 허가를 받을 때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음.

5) 방문사진



【그림 12】 링컨기념관 측각모형도



【그림 13】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음수대 및 단체사진

○ 수집자료 내용

- Catoctin mountain park 밤나무 피크닉 시설 접근성



【그림 14】 캠핑장 접근성 확보 사례

- 방문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국립공원 접근성가이드라인



해석적 미디어의 접근성 체크리스트

Program Type	Yes	No	Notes
Facile Document with Caption			
Downloadable Materials with Download Instructions			
Printed Material for Braille/Other Users			
Real-time and Dynamic Components			
Downloadable Materials with No Sound			
Audio Description			
Facile Interpretive Program			
Printed Material for Braille/Other Users			
Label including "No Sound"			
Real-time and Dynamic Components			
Media Programs with Download Instructions			
Closed Caption			
Audio Description			
Media Programs with No Sound/Partial Audio			
Printed Material including "No Sound"			
Audio Description			
Audio Programs: Partial Audio			
Closed Caption			
Audio Description			
Facile Document			
Facile Interpretive Program			
Facile Materials			
Printed Material for Braille/Other Users			
Facile elements and mechanical interfaces are included in their interface			
Manual and mechanical interfaces are available			
Routes to and through components are physically accessible			
Information is available for all users			
Wayfinding			
Audio Description			
Facile Document			
Facile Document are available in their interface			

해석적 미디어의 접근성 체크리스트



점자 안내가이드



점자안내가이드



촉각 모형 및 점자안내가이드

5. 생활밀착형 시설의 정당한 편의 제공 범위 조사

1) 근린생활시설 등 건물 입구의 접근성

- 미국의 장애인법(ADA법) 및 ICC code를 각 주별로 채택하고 장애인도 건물에 접근하기 위한 기준을 시행
- 건물 내부에 단차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
- 출입문에는 수평·수직 손잡이를 설치하여 어린이 등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형태를 제공



[그림 15] 조지타운 내의 근린생활시설의 접근성 확보

- 모든 근린생활시설의 장애인의 접근을 위한 단차제거 방안이 마련
- 대부분의 출입문은 자동여닫이문 설치를 통해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
- 상점의 출입문을 셋백하여 보행자와 상가 이용자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건물의 셋백한 부분에 경사로로 계획하여 단차를 제거함
- 일부 기존 건물의 경우 단차를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인적지원에 대한 안내표지를 설치



【그림 16】 조지타운 내의 건물 입구의 접근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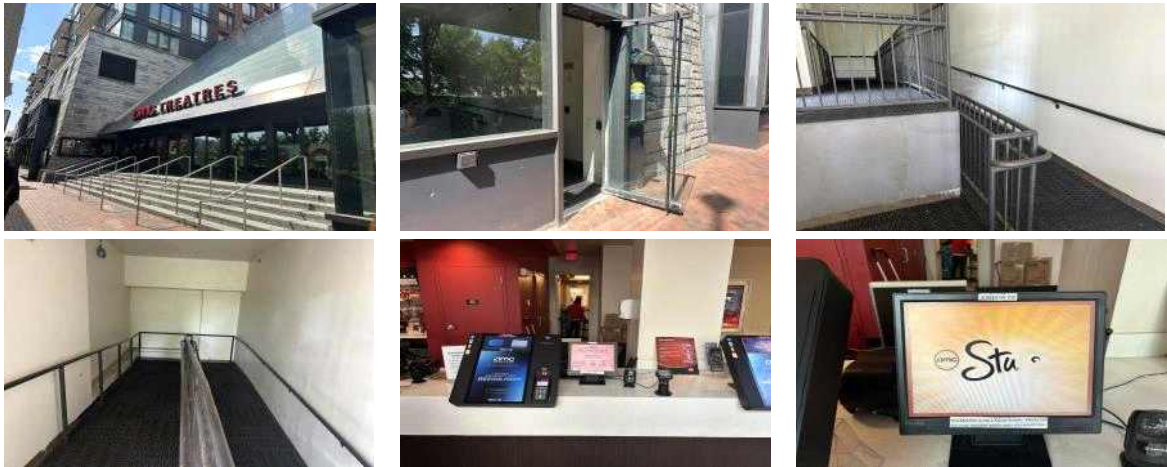
2) 생활밀착형 시설의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인적지원 현황

- 조지타운 상점 내의 복합쇼핑몰로 구역별로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호출벨을 설치



【그림 17】 조지타운 상점 내의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인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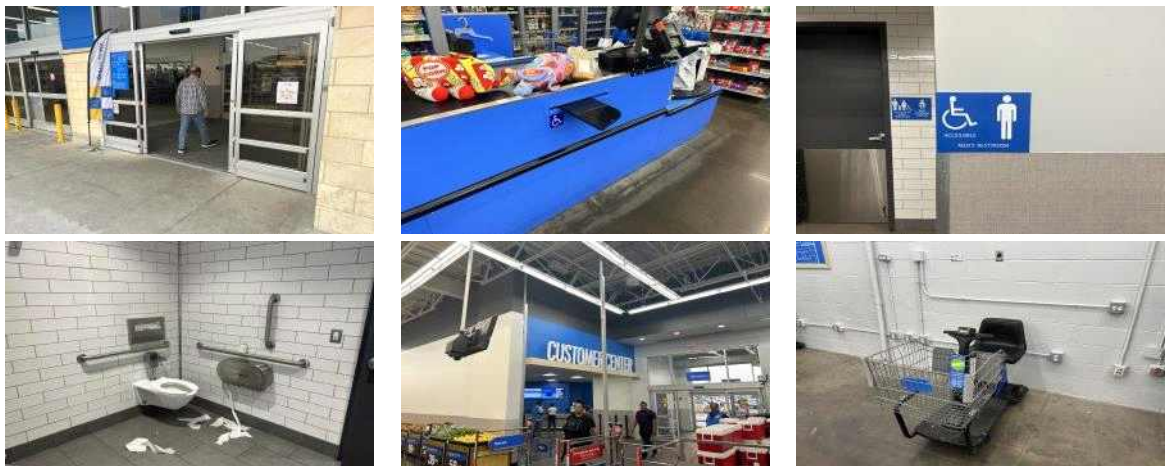
- 극장으로 접근하는 출입문마다 자동여닫이문 및 버튼 설치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 건물 내에서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계획
- 극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티켓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직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그림 18】 극장 내의 시각장애인 등 인적지원

3) Walmart 등 대형마트의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 모든 출입문에 자동문을 통해 누구나 단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
- 판매대는 휠체어 사용자가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접이식 선반을 설치
- 눈에 띄는 안내사인을 통해 장애인이 찾기 쉽도록 설치
- 장애인화장실의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계획
- 장애인, 노인 등 매장 내의 소비자센터를 통해 인적지원을 상시 받을 수 있음
- 보행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전동카트가 비치됨



【그림 19】 미국 대형마트의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6. The Wharf District에 적용된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조사

1) 프로젝트 개요

- 워싱턴 D.C.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획 단위 개발. 원래 수도의 관문으로 계획되었던 워싱턴D.C. 남서부 선창가로써 반세기동안 잊혀져있던 지역을 재개발한 프로젝트
- 사업주: Hoffman-Madison Waterfront LLC(민관협력)
- 규모: 2 million sq. ft.
- 용도: Large Scale Mixed-Use, Retail + Experience
- 마스터플랜: Perkins-Eastman



【그림 20】 District Wharf 마스터플랜 및 전경사진

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요소

- 보행자 중심, 접근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 Barrier Zone(공공시설물, 녹지 활용) 계획을 통한 차량, 자전거, 보행자 통로의 분리
 - 구역 내 차량·자전거의 진입이 필요한 통로는 'share zone'으로 운영 및 속도저감 조치
 - 휠체어 사용자나 노인을 고려한 충분한 폭의 보행로
 - 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출입구 계획
 - 선착장, 야외 무대 및 관람석, 휴게공간 등 외부공간의 접근성 확보



【그림 21】 District Wharf 내 도로체계



【그림 22】 District Wharf 내 접근성이 고려된 건축물 접근로, 선착장, 외부공간(휴식&레크리에이션)

○ 시각적 정보 제공을 위해 적용된 다양한 디자인 요소

- 점자가 병기된 건축물 출입구 안내표지판과 조명 활용
- 크고 가독성이 좋은 글꼴과 명확한 색상 대비를 갖추어 시각적으로 명료한 안내시스템
- 질감이나 패턴으로 구분된 바닥표면



【그림 23】 District Wharf 내 안내사인물



【그림 24】 District Wharf 내 보행로

○ 장애인을 고려한 편의시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주차장,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주차요금정산기
- 장애인용화장실이 설치된 공공화장실



【그림 25】 District Wharf 내 장애인 편의시설

○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 사례

- 레버식 손잡이 또는 발로 뚜껑을 열수 있는 형태의 사용하기 쉬운 쓰레기통
- 손잡이와 등받이가 있는 벤치 디자인, 벤치가 보행로에 장애물이 되지 않으며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이용이 가능한 배치 적용
- 스탠드 계단에서 공연관람 또는 휴식 시 이용이 편리한 테이블(이동식 구조)



【그림 26】 District Wharf 내 공공시설물

Ⅲ. 시사점 및 종합 소감

1) 시사점

○ 접근성 및 Universal Design 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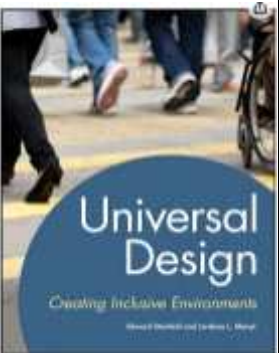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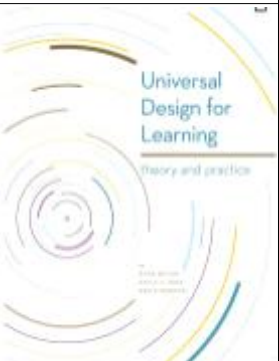
- U.S Access board는 어느 정부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미국 내 장애인접근성 관련 여러 가지 법률의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국 내 장애인접근성 관련 전문성 있고 일관성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ICC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접근성 관련 기준이 건축기준에 반영되어 있음. 미국의 ADA가 건축물의 허가절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이 아닌 측면에서 건물의 허가권과 관계있는 건축법령에서 접근성 요건이 규정될 때 접근성 집행에 효과적임
- 기존 시설의 경우, 신축 건물에서처럼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적용이 어려운 경우, 우선되어야 하는 접근성 항목 등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 라인이 있음
- 생활밀착형 시설의 정당한 편의 제공 범위 조사
 - 모든 건물에 장애인등을 위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건물 접근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원칙이나, 기존 건물과 같이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인적도움을 통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2) 종합 소감

- 접근성 관련 규정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유형의 장애를 위한 측면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성이 얼마만큼 극대화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는 측면은 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 또한, 하나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며 수차례의 회의와 오랜 시간을 들이는 프로세스가 민주주의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춰짐
- 소규모 상가 등 대부분 시설의 접근성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이 강제적인 규제에 의한 영역이 아닌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실천하는 등 보편화된 개념으로 정착된 모습에서 우리사회의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음

IV.수집자료

관련업무내용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	
<p>Universal Design, BF인증을 물리적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p>	<p>·ADA in Details: Interpreting the 2010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건축분야의 ADA 지침서)</p>	
<p>ADA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비교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p>	<p>·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Handbook (ADA 법률 관련 도서)</p>	
<p>건축과 도시환경 분야 등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및 적용 방법에 관한 자료로 활용</p>	<p>·Universal Design: Creating Inclusive Environments (건축과 환경 디자인 분야 유니버설디자인 도서)</p>	
<p>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원칙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 활용</p>	<p>·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관련 도서)</p>	

2 0 2 3. 6. 2 3.

제출자	이 경 혜 (인)
	김 인 순 (인)
	김 윤 호 (인)
	박 서 현 (인)
	강 병 곤 (인)